

<의안번호 제2008 - 2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1. 16.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7. 12. 13. 공포)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본청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며,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 관련규정 근거조항 개정(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 조정(안 별표)

○ 주민생활지원과장 : 5급 ⇒ 4급 또는 5급

다.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 조정(안 부칙 제2항)

○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 6급 1, 7급 1 ⇒ 삭제

라. 별표 :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07. 12. 20. ~ 2008. 1. 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라고 규정한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별예산제도의 한시정원 2명을 삭제 조정하는 것으로서,

- 이 중 한시정원 2명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법령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